

프랑스 거주 외국인에 관한 인구사회통계: 우리나라 외국인통계제도정립을 위한 예비적 고찰

플로랑스 르누치* · 황 명 진**

본 연구는 외국인과 이민자를 비롯한 인구 구성의 다원화 현상에 대한 통계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단일 사례로서 프랑스의 외국인 관련 통계와 통계제도에 대해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고찰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센서스와 이민통계에 대한 통계적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역사적 배경, 법령, 주관 기관에 대해 알아보고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통계작성 절차에 대해 고찰하였다. 아울러, 이민통계에 대한 국내 통계작성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 단어: 이민, 외국인, 센서스, 통계

I. 서론

UN은 2006년 국제인구이동(International Migration 2006)보고서에서 전세계 인구의 2.9%에 달하는 국제이민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지구화(Globalization) 현상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인구이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비록 인구구성에 있어서 구미선진국처럼 이질혼합성(heterogeneity)의 특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다원화사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 탈북난민들과 해외 유학생의 증가로 인해 상당한 수의 “외래”인구의 유입이 목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통계청에 의하면(2007) 우리나라의 국제인구이동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출국자 59만 5,253명, 출입자 63만 8,940명에 달하며 이는 총인구의 1.2%에 달

* Florence Renucci, 프랑스 릴르(Lille) 대학교 사법사연구소(Centre d'Histoire judiciaire) 연구원 | E-mail: flo_renucci@yahoo.com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 | E-mail: mojihwang@gmail.com

하는 숫자이다¹⁾. 이 중 출입자수와 입국자수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국제인구이동은 2005년도 -8만 669명에서 4만 3,727명으로 총 13만 명 가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2006년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나가는” 이민자(emigrants)보다 “들어오는” 이민자(immigrants)의 숫자가 더 많았던 해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북미나 서유럽과 같이 외국에서 이주하는 이민자수가 내국인의 해외출국자수보다 많아지는 사실상의 “이민국(countries of migration)”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통계수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의 주된 관심이 “보내는” 정책에서 “받아들이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설동훈, 2007).

그동안 우리나라는 내국인의 출국이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무개입”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들의 귀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소극적인 정책(relevant policies)을 유지하고 있다(설동훈, 1999). 이와 대조적으로, 비록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외국인과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인 공간이 될 만한 방향수립과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특히 설동훈의 최근 보고서(2007)는 이민정책의 통합적인 접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시도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이민정책 담당자에게 노동이주민과 결혼 이주민 등이 질적인 이민자집단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중복과 비효율성을 제거하면서 실천적인 단기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의 방향성 수립을 위해서 외국인과 이민자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과 이들의 현상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적인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이민자의 국내적응 지원이나 한국인의 다원화사회에 대한 적응 등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설계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는 외국인의 정의를 포함한 법적인 연구가 미미했으며, 그나마도 통계적 관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의 이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통계 제도적 접근을 통해 국내 외국인 관련 통계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유입과 이민정책의 역사가 오래된 프랑스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중심으로 외국인 통계와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정보들이 어떤 기관에서 작성되는지, 그리고 기초자료로서 현재 거주외국인의 수, 유입인구수, 사회지표 등이 어

1)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내·외국인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함.

떻게 조사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II),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정보들이 정부시책과 관련된 특정한 문제들, 즉 사회통합, 이민통제,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등의 문제들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III).

II. 프랑스 사례

1. 프랑스의 이민정책

이민은 통상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 즉 국제인구이동의 한 형태이다. 유엔통계처(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에 의하면 1년 이상 일상적인 거주를 본거지가 아닌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을 장기이민자(long term migrant)로, 3개월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사람을 단기이민자(short term migrant)로 규정하고 협의의 이민은 전자의 정의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통상 “국제인구이동”, “해외이동”, “이민”은 유사한 개념으로 상호호환(Interchangeable)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외국인이란 흔히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 즉 이주민과 혼동될 수 있는데 사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내 체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민자는 현지 적응의 유형이나 기간에 따라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거나, 귀화해서 내국인의 신분을 획득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외국에서의 인구유입, 즉 이민이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이민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에 대처하려는 인구 및 사회경제적 요구로 인하여 19세기와 20세기에 프랑스에서는 정치적, 법률적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이 두 세기 동안 전체적으로 법률상 프랑스국적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프랑스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마련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851년 2월 7일 법률에서는 속주주의에 기초하여 프랑스국적의 자동취득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1851년과 1889년 사이에 외국인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하자 프랑스정부는 이들 외국인이 프랑스국민과는 별도의 집단을 구성하며 성장해 가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1889년 6월 26일 법률을 통해 속주주의를 확장하게 된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인구 요구로 말미암아 프랑스국적취득의 요건을 한층 더 완화하게 되는데, 1927년 법률은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에도 프랑스정부는 자유주의 정책을 견지

하는데, 이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프랑스의 입장에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²⁾ 그러나 1973년부터 나타난 경제위기는 이러한 정책에 종지부를 찍게 하고 대신 이민자들에 대한 폐쇄적 정책을 등장하게 했다. 1953-1973년에 이민해 온 인구는 오랜 동안 예비노동력으로만 간주되어 왔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프랑스에 영구정착하고 있음이 1980년대에 밝혀지자 이 이민자들의 국적 문제와 이들의 자녀로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동의 사회통합문제가 바야흐로 정치적, 사회적 논쟁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프랑스는 사회경제의 기초와 자유주의적 기초 사이에서 유동적이고 상반된 이민정책을 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민자에 대한 통계조사의 필요성이 국가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프랑스는 이 분야의 통계작성에 관해 20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통계정책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발전된 것은 최근 수십 년간의 일이라 하겠다.

2. 공식 통계의 작성

1) 기원과 제도

모든 근대사회에서는 인구조사가 주기적으로 행해져 왔다. 프랑스에서는 17세기에 왕권에 의해서 외국인의 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인구조사가 행해졌는데, 다만 이러한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소략했다. “인구조사”(recensement)라는 용어는 원래 그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정액지대납부자(censitaire)와 징병대상자(militaire)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한 데에서 나왔다. 그러다가 1851년 인구조사 때에 국적을 묻는 항목이 추가되어³⁾ 한동안 이 주제에 대한 설문 형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실시되어 오다가, 1866년에 피조사자가 자신이 태생적으로 프랑스인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프랑스국적을 취득한 것인지 답하도록 하는 설문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설문항목은 표현을 달리 하여 이후 다른 인구조사에서도 채택되는데, 1871년에서 1946년 사이의 인구총조사의 국적에 대한 항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뉘게 된다. (1) 생래적으로, 즉 출생부터 프랑스인, (2) 귀화에 의한 프랑스인, (3) 외국인. 이 중 외국인만이 그들의 이전 국적을 명시해야 할 의무를 지다가 1962년에는 귀화인

2)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 Histoir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depuis la Révolution*, Paris : Grasset, 2002, p.160 이하.

3) J. Lacroix et S. Thave, “Les immigrés dans les recensements : décalage entre législation et outils de mesure”, *Revue Française des Affaires Sociales* (이하 RFAS), n° 2 (1997), pp.71-99.

들에게도 이러한 항목에 대한 답을 요구하게 되었다.⁴⁾ 그리고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프랑스영토에 들어온 날짜가 언제인지에 대해 묻는 항목이 1999년 인구조사 때에 추가되었다.⁵⁾ 공식통계상 설문방식의 변화와 입법의 변천 사이에는 일종의 연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설문방식의 변화는 식민지개발로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의 결과일 수도 있다. 복잡한 식민지법은 분류상 불확실성과 오류 등을 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식민지 원주민들은 대다수가 프랑스의 주권범위에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프랑스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비록 프랑스 국적은 가졌지만 프랑스 시민권은 없었던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정치권도 제한적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차별적인 법적 지위를 지녀야만 했다. 식민지가 아닌 보호령에서는 법률적 상황이 이와는 달랐는데, 이는 피보호민들이 많은 경우 프랑스재판소에 의해서 외국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보호령의 원주민들은 시민이 아닌 “백성” 또는 피보호민 자격 외에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된 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1921년 인구조사 때에 이등 식민지와 보호령에 있는 피조사자들은 국적을 묻는 항목에 대부분 “프랑스인”이라고 답했고, 설사 이러한 답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부에서는 임의로 피조사자의 성과 이름을 국적의 기준으로 채택했다. 즉 성과 이름이 아랍이나 무슬림의 철자로 이루어진 경우 행정부의 지침 상 당사자들은 원주민이나 백성 또는 프랑스 보호민으로 분류되었던 것이다.⁶⁾ 1954년과 1962년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출생부터 프랑스인”을 “알제리 출신 무슬림”과 “알제리 출신 비(非)무슬림”으로 나누고 있었다.⁷⁾ 여기서 “무슬림”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놀랄 만한 일인데 그 이유는 식민통치상 분류기준에서 차용한 것인데, 사실 식민통치 상 분류기준이 종종 혼동되기도 하고, 불확정적이며 게다가 비법률적인 문화 관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식민통치 상 분류기준은 출생과 종교를 혼동하고 있었던 것인데, 북부 아프리카인 또는 북부 아프리카출신자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프랑스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고 하겠다.⁸⁾

설문형식에는 별 변화가 없었던 반면, 20세기에 외국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4) Patrick Simon, “Nationalité et origine dans la statistique française. Les catégories ambiguës”, *Population*, n° 3 (1998), p.545.

5) 같은 곳.

6) Alexis Spire et Dominique Merlié, “La question des origines dans les statistiques en France. Les enjeux d’une controverse”, *Le mouvement social*, n° 188 (juillet-septembre 1999), p.124.

7) 같은 곳.

8) Michèle Tribalat, “Les populations d’origine étrangère en France”, *Commentaire*, n° 109 (printemps 2005), p.144.

정보는 보완되어 표의 형태로 양산되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이와 같은 관심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인구의 주요 특징, 특히 직업 활동에 관한 정보는 1926-1946년에 별도로 편찬된 자료집에 잘 나타나 있다. 1954년의 인구조사에서는 이민에 대한 항목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1968년의 인구조사에 가서는 다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즉 최초로 국적이 세대, 거주 등에 관한 정보와 연계되어 도표화됐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민문제에 대한 관심이 변치 않고 유지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인구조사방법이 서서히 정착됐던 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인구조사가 정기적으로 (7-9년마다) 행해졌다면, 오늘날에는 이전통적 대(大)산출방식을 대신하는 방법으로서 비용이 덜 들고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수시(隨時)인구조사체계를 택하고 있다.⁹⁾

2) 인구조사 담당기관

인구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고 수집하기 위한 노력은 혁명기 이후 계속되어 왔다. 공화력 8년(즉 1800년)에는 내무부 장관 루시앵 보나파르트(Lucien Bonaparte)가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했는데, 그는 우선 비공식적으로 통계사무소를 설치했다. 통계사무소는 내무부 장관의 사무국에 속해 있다가 공화력 9년 제12월에 공식적 기구가 되었다.¹⁰⁾ 그러다가 1812년에 폐지되고 대신 각 부처별로 통계사무소가 설치되게 된다. 1833년에는 상무장관 아돌프 티에르(Adolphe Thiers)가 중앙통계기구를 설립하여 상무부 밑에 두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앙통계기구는 제2제정 때에 재정비되었고 그 통계영역도 확장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명칭에 있어서는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프랑스 일반 통계국”(Statistique Générale de la France, SGF)이라 불리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 그 명칭을 유지한다. 이 기구는 노동부(1906년 설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나 소비에 관련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다루었다.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국무위원장 소속이기도 했던 SGF가 국가경제부의 기구가 된 것은 1936년의 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 기에는 통계국이 재정비되었다. 1946년 4월 27일 재무법률에 의해 국립통계및경제연구원(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9) Anne Chemin, “2005, an I du recensement nouveau : mieux connaître la “population légale””, *Le Monde. Dossiers et Documents*, n° 370 (décembre 2007), p.8.

10) Bernard Gille, *Les sources statistiques de l'histoire de France : des enquêtes du XVIIe siècle à 1870*, Genève : Droz, 1964, p.122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¹¹⁾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 기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임무가 주어졌다. 즉 행정문서의 관리, 자료집의 관리 그리고 통계의 생산이었다. 가계, 거주, 건강, 임금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식의 설문조사방법이 적용되었다. 1950년대에는 통계적 방법론의 현대화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통계조사도 빈번해지고 다른 행정부처에도 통계부서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INSEE의 역할 중 각 통계부서를 총괄하는 역할이 강화된다. 1994년에는 기업통계부서가 설치되어 기존의 인구사회통계부서와 함께 총무부 소속으로 기능하고 있다.

INSEE는 인구조사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에 관한 통계를 다루는 유일한 기관은 아니다. INSEE 외에도 1945년에 알프레드 소비(Alfred Sauvy)를 초대원장으로 하여 설립된 국립인구연구원(Institut National des Études Démographiques, INED)도 국가수준과 국제수준에서의 인구현상과 그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구는 권한 상으로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인구현상과 사회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응용인구학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분야의 자료수집과 배포를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제3의 기구로서 사회통합고등위원회(Haut Conseil à l'Intégration, HCI)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민통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 기구는 1989년에 창설되어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4년에는 HCI 내에 이민통계조사국(Observatoire Statistique de l'Immigration, OSI)이 설치되게 되는데, 각 행정부처에 산재된 자료를 종합하여 이민자들에 대한 통계를 모으고 해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OSI의 임무는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민인구의 유동성, 특히 프랑스에 정착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 기구가 제공하는 정보와 분석을 보면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을 살필 수 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구는 통계도구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거나 그를 장려하는 일, 그리고 사회통합지표를 제공하는 일 등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INSEE와 INED는 통계의 간행과 배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라 하겠다. 1878년부터 SGF가 통계연감을 정기적으로 간행해 오다가¹²⁾ 1911년에는 프랑스 일반통계 공보(Bulletin de la Statistique générale de la France)를 간행했다. 이후 국적법의 대개혁이 이루어지던 때 혹

11)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통계청에 해당하는 기관. 국내에서는 프랑스 통계청으로 불리기도 한다.

12) Bernard Padieu, "La diffusion de l'information statistique", in : Joëlle Affichard (dir.), *Pour une histoire de la statistique*, tome II : Matériaux, Paris : Economica-Insee, 1977-1987, p.826.

은 이민이 핵심적 논쟁거리가 되는 때에는 외국인에 대한 통계가 인구조사결과를 간행할 때에 별권으로 편집되기도 했다.¹³⁾ 이후 새로운 간행물들이 정기적으로 발행되었다. 현재 유럽 차원에서 볼 때 간행기간이 점점 단축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2003년도부터 무료화되었다.¹⁴⁾ 사실 INSEE는 현재 일련의 잡지와 자료집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영어로 번역되어 제공되고 있기도 하다. INED는 인구(Population)와 인구와 사회(Populations et Sociétés) 두 가지 잡지 외에도 6가지 총서와 갖가지 다양한 도서들을 편집발행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INSEE, INED, HCI 등이 측정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도구를 활용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통계자료 및 외국인에 관한 자료의 활용

INSEE는 그 담당부서가 진행하는 인구조사와 “고용”조사에 주로 근거하여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를 조사한다. 인구조사를 통해 이 인구의 일정한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다: 출신 국, 출생 시 국적, 현 국적, 나이, 활동, 가족 구성, 주거환경 등이 그것이다. 2004년에는 외국인의 수가 350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중 300만 명은 프랑스 국경 밖에서 태어났고, 55만 명은 국경 내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55만 명 중 45만 명은 18세 미만이었으며, 그 부모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었다.¹⁵⁾ 한편 인구유동의 산출은 이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INED와 HCI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2002년 기준, 유럽경제권 출신이 아닌 자 중에서 최초로 프랑스 체류권을 얻은 자의 수는 17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3-4만 명의 유럽인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¹⁶⁾ 외국인의 유출에 관한 통계는 아직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강제출국(추방, 밀입국자의 반송, 입국금지)의 경우나 외국인이 출신

13) 예를 들어, SGF, *Dénombrement des étrangers en France. Résultats statistiques du dénombrement de 1891*, Paris : Imprimerie nationale, 1893.

14) Cf. www.insee.fr 사이트 참조.

15) Catherine Borrel, “Enquêtes annuelles de recensement 2004 et 2005”, in : *Insee Première*, n° 1098 (août 2006) (www.insee.fr/fr/ffc/ipweb/ip1098/ip1098.html) 참조.

16) C. Borrel, “Les limites de l’approche statistiques des circulations migratoires. Le système statistique français”, in : RFAS, n° 2 (2004), pp.78-79 (www.sante.gouv.fr/drees/rfas/rfas200402/200402-art05.pdf).

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경우에는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다. 출국이 자의적인 경우, 그 수를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기껏해야 프랑스에서 근로했던 자로서 은퇴하여 외국의 다양한 연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 프랑스 외의 국가로 떠난 이들의 수를 대략 산출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지표는 체류권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를 조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체류권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초 체류권이 만기에 도달했을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출국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할 때, 출국의 비율은 전체 입국자(유학생 포함) 중 35%가 체류 첫 해에 프랑스를 떠난다고 볼 수 있다.¹⁷⁾

외국인의 입국이나 출국의 경우, 그 집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집단도 더러 있다. 체류권이 없는 외국인, 있더라도 그 체류권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하지 않은 외국인, 즉 불법이민자들의 수를 측정하기란 어렵다고 하겠다. 마찬가지로의 문제가 두 나라에 모두 주거를 갖고 있는 경우 또는 출신국과 영접국 사이를 왕래하는 출근이동인구의 경우에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인구의 수를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비정규상황에 처한 외국인의 수는 최근 몇 년간 20만에서 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를 산출하기 위해서 통계학자들은 국가의료보조의 혜택을 보고 있는 비정규상황의 외국인의 수(15만 명)를 기초로 하여 거기에 “연(年)유동 1%”를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¹⁸⁾

체재인구와 유동인구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위에서 본 자료 외에 여러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가 아래와 같이 활용된다:

- 이민국(Offic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 OMI)은 해외이민자 보조 사회부(Service Social d'Aide aux Émigrants, SSAE)와 합병되어 현재는 외국인과 이민자 안내 사무국(Agence Nationale de l'Accueil des Étrangers et des Migrations, ANAEM)이라 불리는데, 가족재결합의 수혜자로서의 제3국 출신 미성년자들의 입국허가를 포함한 외국인의 출입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출처 OMI-STAT). 이 때 통계치의 산출근거는 해당기관의 감독 하에 진행되는 절차(노동자 입국, 가족 입국, 자발적 출국)로서의 건강진단 시 기록된 자료들이다. 하지만 유럽경제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건강진단을 받을 의

17) Xavier Thierry, “La fréquence de renouvellement des premiers titres de séjour”, in : *Population*, n° 56 (2001), pp.449-466.

18) Mission d'analyse et de proposition sur les conditions d'accueil des mineurs étrangers en France, *Immigration clandestine : une réalité inacceptable, une réponse ferme, juste et humaine. Rapport*, janvier 2005, 자료 열람 : www.senat.fr/rap/r05-300-1/r05-300-1.html.

무가 없기 때문에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는 불완전하다고 하겠다.

- 내부무는 체류권의 발급에 관한 통계를 생산한다. 이 통계는 사회노동연대부와 법무부에서 내는 통계에 의해 보충되게 되는데, 이 두 정부부처는 국적의 취득이나 상실, 귀화 등에 기초한 통계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무의 자료(1993년에 제정된 AGDREF 파일)를 보면 프랑스에 입국하여 1년 이상의 유효기간으로 체류권을 처음으로 획득한 성인외국인의 수를 알 수 있다.¹⁹⁾ 또한 이 파일에는 일정한 절차로 프랑스 행정당국과 접촉한 바가 있는 (정규적 혹은 비정규적 상황의)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담겨 있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은 체류권의 발급기관인 도청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기한이 만료된 체류권은 5년이 지나면 폐기되어 그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게 된다.

- 망명자 및 무국적자 보호 프랑스사무국(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OFPRA)은 망명신청과 망명자 지위 부여에 관한 통계를 생산한다. 2002년 5월 이후부터는 문서기록에 성인과 고립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동반 미성년자도 포함시키기 시작하여 이들에게 개인문서번호를 부여, 그 친척의 문서에 부속시키고 있다. 망명“신청”에 관한 통계치는 최초의 망명신청을 가리킨다. 게다가 2004년 1월 1일부터는 OFPRA의 보호를 받는 모든 외국인은 통계화되어 권리포기, 귀화, 사망, 정지 또는 철회, 최종출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통계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통계자료 관리 체계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제 통계가 외국인관련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방법론, 인구통제 그리고 보건권과 사회권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19) “2003년 11월 26일 법률 이후로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외국인들은 체류권의 신청이 면제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는 AGDREF 파일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Le fichier AGDREF (Gestion informatisée des dossiers de ressortissants étrangers en France). Quelle utilisation pour la statistique des flux migratoires en France? Entretien avec Xavier Thierry”, in : *Migrations*, n° 23 (2005), p.28 (www.timc.msh-paris.fr/spip.php?article73). 프랑스내 전산화된 외국인 파일에 관해서는 Sylvia Preuss-Laussinotte, *Les fichiers et les é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écurité*, Paris : Bibliothèque de droit public, 2000.

3. 통계와 외국인 : 현안의 문제들

1) 외국인, 이민자 그리고 사회통합정책

최근 수십 년 간 외국인통계에 관해 벌어진 논쟁 중의 하나는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민과 관련된 용어정의는 앞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사실상 1990년대에 까지만 하더라도 “이민자” 범주가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 범주를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전자의 범주가 정책적인 목적에 합당한 인구를 파악하는데 더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이민자”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출신이지만 프랑스인으로 귀화한 자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 범주는 해당 현상의 법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차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단순히 외국인의 수를 산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인구의 특징과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의 사회통합과 프랑스 사회 내에서의 그들의 도정(道程)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미셸 트리발라(Michèle Tribalat, INED)가 자신의 여러 연구에서 옹호한바,²⁰⁾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HCI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 기구가 작성하고 1991년에 간행된 자료에 따르면, “이민자란 프랑스 국적을 획득했던 아니든 간에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태어나 현재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²¹⁾ 따라서 이민자의 정의에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 이민자는 단순히 프랑스 밖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수의 프랑스인, 특히 알제리에서 귀환한 프랑스인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다.

몇몇 학자들은 프랑스에 정착하게 된 이민인구를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후손들, 즉 이민자의 자녀(제1세대)와 손자녀(제2세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곤 했다. 이러한 접근의 목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민이 프랑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었다. 미셸 트리발라는 “인구 기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접근법을 개념화했다. 인구 기여는 직접적 인구기여(“프랑스 밖에서 태어난 외국인”과 “프랑스 밖에서 태어나 국적취득을 통해 프랑스인이 된

20) M. Tribalat, “Immigrés, étrangers, français : l'imbroglie statistique”, in : Population et sociétés, n° 241 (décembre 1989) : “Combien sont les Français d'origine étrangère?”, in : Économie et Statistique, n° 242, pp.17-29 참조.

21) HCI, Pour un modèle français d'intégration. Rapport au Premier ministre, Paris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coll. des rapports officiels, février 1991 참조.

자”)와 간접적 인구기여(“이민으로 인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모든 출생을 포함”)로 나뉜다.²²⁾ 이민의 인구기여의 산출은 이전에도 예외적인 방식으로 시도된 바 있었다.²³⁾ 이러한 접근은 해당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이 계획은 1999년 인구조사와 더불어 행해진 한 조사에서 구체화되게 되는데, INSEE와 INED가 공동으로 진행한 가족사 연구(Études de l'histoire familiale)가 그것이다.²⁴⁾ 피조사자가 태어난 나라, 그 부모가 태어난 나라 그리고 그 자녀가 태어난 나라를 조사함으로써 “1999년에 이민해 왔을 당시 적어도 이미 이민해 온 부 또는 모, 조부 또는 조모가 있었고 그 전체가” 미셸 트리발라가 명명한 바 “외국 출신 인구”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측정가능하게 했다.²⁵⁾

현재 방법론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번째 논쟁은 통계에 “민족적” 범주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민족”, 종교 또는 윤리적, 역사적 연원을 가진 정치적 견해 등과 같은 특정한 변수 등은 기피하는 것이 프랑스의 공공통계의 전통이다.²⁶⁾ 예를 들어, 1876년 제3공화국기에 이미 예배를 언급하는 항목이 폐지된 바 있다. “민족적” 범주를 고려하는 접근법은 시민이라고 하는 보편적 관점과도 배치되고 다른 프랑스인들과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인구들에게 낙인을 찍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국가가 이러한 통계를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식민지시대 또는 비시정부의 유령이 간혹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²⁷⁾ 이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20세기초의 우생학과 인종주의가 이러한 정신을 표출시켰던 것이며 개인을 그 출신에 따라 연구하는 풍토로 강하게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지지하는 프랑스의 몇몇 연구자들은 앵글로-색슨이나 네덜란드의 경험을 논거로 그러한 연구를 통해 오히려 차별의 현황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²⁸⁾ 출신문제는 인구조사에서보다는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에 적합

22) M. Tribalat, “Immigrés, étrangers, français : l'imbroglia statistique”, op. cit.

23) 1927년 A. 소비(A. Sauvy)의 작업과 1942년 P. 드프와(P. Depoids)의 작업이 그것이다(M. Tribalat (dir.), *Cent ans d'immigration. Étrangers d'hier, Français d'aujourd'hui*, Paris : PUF-INED, 1991, pp.1-2 참조).

24) F. Cassan et al., “Étude de l'histoire familiale : l'édition 1999 de l'enquête Famille”, in : *Courrier des statistiques*, Insee, n° 93 (2000) 참조.

25) M. Tribalat, “Les populations d'origine étrangère en France”, op. cit., p.137.

26) Y. Lemel, “Qu'est-ce qu'une enquête statistique”, in : V. Lemarchand et M. Marpsat (dir.), *Construire les données sociales*, Paris : INSEE, 1988, pp.23-26.

27) François Héran (directeur de l'INED), “Statistiques ethniques ou mesure de la diversité?”, in : *Le Monde. Dossiers et documents*, op. cit., p.8.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이 채택된 것은 몇 년 되지 않는데, 단지 피조사자의 객관적 출신이나 주관적 출신(소속감)에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타인들에게 나타나는 표상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사회직업생활에서 보이는 부정적 차별현상을 밝힐 수 있고 더 나아가, 예를 들어, 학업성취의 가능성을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구조사설문지에 “민족”항목까지 삽입하는 앵글로-색슨 모델을 굳이 따르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 알렉시 스피르(Alexis Spire)와 도미니크 메르리에(Dominique Merlié)가 지적하고 있다시피, “문화적 다양성은 회화 언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²⁹⁾ 그런데도 이 설문항목은 1992년부터는 여러 다양한 조사에 삽입되었다. 동일한 관점에서 1999년 “가족”조사 때에는 피조사자의 부모가 태어난 나라를 묻는 항목이 삽입되었다.

오늘날 정치분야에 있어서도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2007년 10월 23일 국회에서 채택된 이민, 사회통합, 망명 등의 통제에 관한 정부법안 제63조는 피조사자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연구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문은 세바스티앵 위그(Sébastien Huygue) 의원과 미셸 타바로(Michèle Tabarot)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응답자의 인종적 혹은 민족적 ‘배경’을 나타내는 개인적 성격의 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허가부로 허용하고자 했다.”³⁰⁾ 헌법위원회는 2007년 11월 15일 위 제63조의 무효를 선언하는데, 이유는 “응답자의 출신의 다양성, 차별, 사회통합 등의 측정에 관한 연구수행에 필요한 정보처리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을지라도, 헌법 제1조에 규정된 원칙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민족적 배경이나 인종 등을 조사항목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다.³¹⁾ 프랑스헌법 제1조는 실제로 “프랑스는 불가분의 세속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시민의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8) P. Simon, “La représentation statistique de l’immigration. Peut-on comptabiliser l’ethnicité?”, in : J.-L. Rallu et al. (dir.), *Old and new minorities / Anciennes et nouvelles minorités*, Paris : John Libbey Eurotext/INED, 1997, p.29.

29) A. Spire et D. Merlié, *op. cit.*, p.130.

30) “Le Conseil constitutionnel invalide les statistiques ethniques”, *Le Monde*, 17 novembre 2007 (르 몽드사이트 www.lemonde.fr 에서 열람가능).

31) 결정 전문은 헌법위원회의 사이트 참조(www.conseil-constitutionnel.fr).

2) 이민통제와 선택이민

2003년에 이민에 관한 두 개의 법률이 통과되었다. 입국과 체류에 관한 11월 26일 법률과 망명에 관한 12월 10일 법률이 그것이다.³²⁾ 첫 번째 법률은 강화된 통제체제를 정착하고 이민경로의 조직원들에 대한 형을 무겁게 함으로써 불법이민을 줄여 보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정부는 두 가지 수단을 특별히 사용하고자 했다. 즉 강제추방의 수를 증가시키고 망명요청에 대한 OFPRA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2005년에는 “불법이민에 대한 투쟁 강화 계획”이 새롭게 제기된다. 그에 따르면 이민경찰과 이민통제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었다(2005년 5월 26일 시행령).

2006년 6월 30일에는 새로운 법률이 채택되었다. 이 법률은 프랑스 경제에 유리한 자격을 지닌 자들의 이민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구비한 외국인, 창업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학생들, 자격증소지자 등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반면, 비숙련, 단순 노동, 그리고 계절노동자는 귀환을 장려하기 위해 3년 동안 1년에 6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국경을 개방했던 것이다.³³⁾ 그와 동시에 2006년 법률은 가족재결합과 결혼이민 등을 제한하고, 격리조치를 강화하기위해 국적법을 개정했다.³⁴⁾

이후 정부는 같은 해에 불법이민자를 개별 심사하여 합법화하던 것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6월 30일 법률이 통과되고 나서 1개월 후 국경 없는 교육망(Réseau éducation sans frontières, RESF)³⁵⁾와 같은 사회인권 단체의 압력으로 내무부장관은 3만 건의 신청 중 불법상태의 이민가족 6,000세대를 합법화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일단의 조치는 국경개방이라고 하는 “유럽공동체”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입법화된 2007년 10월 23일 법률은 2006년 6월 30일 법률과 동일한 법정신에 입각해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일정한 직종의 취업이 예상되어 있는 외국인이나 취업이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에 대한 “예외적으로”도청(préfecture, 경찰행정청의 역할 담당)을 합법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직종이나 자격정도에 따라 외국인이나 이민자들의 직업

32) 두 개 법률의 전문은 www.legifrance-gouv.fr 에서 열람가능.

33) 이 법률의 전문은 www.assemblee-nationale.fr 에서 열람가능.

34) Yves Lequin (dir.), *Histoire des étrangers et de l'immigration en France*, Paris : Larousse, 2006, p.495.

35) 이 모임은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성의 목적은 부모의 불법상태로 말미암아 국경 밖으로 내몰릴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계속해서 프랑스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선택에 대한 “상한선”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선별적인 이민정책은 자격 있는 자들을 유인하고자 “점수”허가제를 채택한 캐나다 모델에서 따온 것이라 할 수 있다. OSI에 따르면, 취업이민이 적법이민의 약 5%에 달하고, 기타 이민인구유동은 가족재결합(전체 중 63%, 즉 101,937명), 망명권의 수혜자(전체 중 8%, 즉 9,790명), 외국인학생(55,000명 이상) 등이라고 한다. 또한 이 법률은 자신의 가족을 프랑스로 오게 하려는 자에게 최저임금의 1배에서 1.2배의 수입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해에 프랑스 대통령은 비공식적으로 강제추방 쿼터를 정했다. 담당부처인 내무부에 총 25,000명의 비자격(불법) 이민자들을 국경 밖으로 내보낼 것을 요구했으며, 2008년도에는 26,000명, 2010년도에는 28,000명 수준을 요구하였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제시한 실행안을 검토해 보면, 2006년에 불법상태에 있던 24,000명의 외국인을 프랑스 국경 밖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는 2005년도에 비해 20% 증가한 수치이며 그 이전에 비하면 최소 50% 증가한 수치이다. 해외영토에서는 격리의 수가 2006년도에 24,000명에 달했다. 반면 OFPRA에 따르면 프랑스에 망명을 신청한 건수는 2005년도에 9.7% 줄었고, 2006년도에는 35%(35,000건)가 줄었다.³⁶⁾ 그러나 망명신청에 대해 OFPRA가 망명신청위원회(Commission des Recours des Réfugiés, CRR)에 결정을 회부하는 비율은 여전히 매우 높다.³⁷⁾ 통계작성방법과 이민통제 다음으로 제기되는 세 번째의 문제는 이민자의 자격과 권리를 포함한 사회현안적인 관심사이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의 보건권과 사회권에 대한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3) 외국인, 통계 그리고 보건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통계는 차별에 대항해 투쟁하거나 국가의 공공질서나 경제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는 것 보다는, 인구변화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각자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과 사회권 및 보건권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등 조력하는 입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법적, 사회적 권리와 복지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6) 신청자 중 아프리카인이 가장 많은데(약 13,000건), 그 다음이 아시아인(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인데 대략 11,000건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37) CRR, *Rapport d'activité 2006*, p.6 참조. 위원회의 사이트 www.commission-refugies.fr 에서 열람 가능.

외국인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의 작성과 실태의 파악은 그들을 위한 사회정의와 약자 보호, 나아가 다문화, 다원화를 지향하는 사회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밑그림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확한 외국인 통계의 작성과 이를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통한 “증거기반” 이민정책 수립은 현안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환류시키는 체계를 구축한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통계작성과 이를 이용한 이민정책의 수립에 대한 시사점이 클 수밖에 없다.

1993년 8월 24일 법률은 사회보장 가입과 수당혜택 그리고 사회부조상 일정 수당 등을 프랑스 내 합법적 체류의 요건으로 규정했다. 1998년 5월 11일 법률은 이 법문에 몇 가지 수정을 가했지만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1999년 7월 27일 법률은 일반질병보험(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MU)을 제정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자를 주거가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자에게 한정했다. 따라서 프랑스 내에서 불법상태에 있는 이들은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수당의 지급과 납입금수수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장기관들은 피보험외국인이 합법적 상태에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장기관들은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직접 열람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임을 표방하는 보험이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의 정치적 동기는 “통풍구”, 즉 외국인들이 프랑스체제의 혜택을 보기 위해 집단으로 불법한 절차를 통해 프랑스에 온다는 망상인 것이다. 이러한 논거는 다음과 같은 사실 앞에 설득력을 잃고 만다. 즉 프랑스에 오는 이들은 주로 젊은이들인데, 합법적인 방식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불법상태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CMU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국가의료보조(Aide Médicale d'État, AME)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월수입의 상한은 CMU나 AME나 비슷하지만, 적용을 받는 치료는 다양해서 특히 안과와 치과가 그러하다. 2003년 12월에는 AME의 적용을 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된다. 즉 이용자는 최근 3개월간 프랑스에 거주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전에 “건강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 응급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인정되었던 “즉시승인”절차가 폐지되게 된다. 대신 “위급하게 입원한 이의 건강상태가 생명의 유지를 위해 틈틈이 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부담”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³⁸⁾ 이 규정은 유럽

38) Didier Maille et al., “L'aide médicale d'État : comment un droit se vide de son sens faute d'être réellement universel”, in : Revue de droit sanitaire et social, n° 4 (juillet-août 2005),

집행위원회의 사회권 분과위의 비판을 받게 된다.³⁹⁾ 보건체제의 실질적 보편성이라는 문제 외에도 이 규정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질병을 응급상태에서 치료케 하기보다는 예방하고 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편 도(道)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부조는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체류 상태의 이민자에게도 제공되기도 한다. 결국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프랑스 영토 내에서의 거주기간에 관한 조건 없이,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의 체류상태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사회부조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숙박 및 사회재적응 센터(Centre d'hébergement et de réadaptation sociale, CHRS)에의 입소허용과 같은 사회부조, 아동에 대한 사회부조지급, 병원의료부조 등이 그 예이다. 프랑스 본토에서 최소 3년을 계속해서 거주한 경우에는 외국인도 왕진의료부조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외적인 경우로서 불법상태의 외국인도 사회부조의 주무장관의 특별허가로써 사회부조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응급실 입원과 그 진료는 불법상태의 외국인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베풀 필요가 없는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그 접근가능성은 이보다는 대체로 더욱 불확실하다 하겠다.⁴⁰⁾

CMU와 AME의 수혜자에 대해 우리가 얻는 주요 통계자료는 사회사업일반 감사원(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 IGAS)으로부터 나온다. 그 통계에 따르면, 2004년도에 AME의 수혜자의 비율이 크게 감소했는데(2003년도에는 164,569명이었던 것이 2004년도에는 146,000명으로 11% 감소), 이는 예년에는 순증가하던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감소는 이 분야 있어서의 질차가 더욱 복잡해진 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허위신고에 대한 경계로 인해, 신청자가 그 부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통계조사는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⁴¹⁾ 현재 AME의 수혜자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는데, 위에서 본 이유들

p.546.

39) 2004년 11월 결정, 2005년 3월 공간, www.coe.int에서 열람가능.

40) Conseil nationale du sida, *Rapport suivi d'un avis du Conseil national du sida sur la situation des personnes atteintes par le VIH de nationalité étrangère et en irrégularité de séjour*, Paris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décembre 2005 (La documentation française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가능), p.23.

41) 다만 보건부 산하의 조사연구평가통계부(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DREES)에서 사회연대와 보건에 관한 문제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

이 그들의 대략적인 수가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한편 그들의 질병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그들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실제비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보건권에 대한 현 외국인의 접근성 외에 노령 외국인(보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의 은퇴도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 인구가 노령화함으로써 보건정책의 장래를 보다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래학적 연구가 필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2005년도 기준 프랑스의 1,200만 명이 60세 이상이었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21%에 해당한다. 여러 가지 전망에 따르면 그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서 2020년에는 1,70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27%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민자도 예외는 아니다. 1999년도 인구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325만 명의 외국인이 있고, 그 중 60세 이상이 537,000명(즉 16.5%, 1990년도에는 11.4%)”이라고 한다.⁴²⁾ 북부 아프리카 출신인들이 이 노령화인구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에 대한 일반조사를 통하면 이러한 현상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이민노동자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들의 전체 수는 22.7% 감소한 반면, 그 중 나이 60세 이상인 자의 수는 107% 증가한 것이다.⁴³⁾ 이 수치는 위 기숙사들에 대한 최대관리자인 Sonacotra의 통계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이다. 그렇지만 이 수치가 전부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것은 각지에 흩어져 사는 이러한 인구 자체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마찬가지로의 환경 속에 사는 여성들에 대한 자료나 별다른 가족적 유대관계 없이 사는 부부들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산에 의하면 그 수는 위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수에 육박할 것이라 한다(8만 명).⁴⁴⁾ Sonacotra의 예측에 따르면, 거주민의 노령화는 2010-2020년에 절정에 달할 것이라 한다. 같은 기관에 의하면, 2011년에는 거주민의 절반 이상이 55세 이상일 것이라 한다.

당장으로서 이러한 인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보다 연금과 관련된 제권리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 수년 간 외국국적의 은퇴자들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사실 법률상으로는 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 외국국적의 은퇴

넷상에 공개하고 있음을 적기해야 할 것이다.

42) Françoise Bas-Theron et Maurice Michel (membres de l'IGAS), *Rapport sur les immigrants vieillissants*, novembre 2002, p.1 (<http://lesrapports.ladocumentationfrancaise.fr/BRP/034000107/0000.pdf>).

43) 같은 곳.

44) 전계서, p.2.

자들이 프랑스에 거주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고 수당의 지급은 외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인최저수당(요즘 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연대수당)에 관해서는 국적요건이 폐지되었는데, 이는 이 수당이 “비납세” 사회권이기 때문에, 즉 이전의 다른 모든 납입금과는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이민 온 이들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은퇴할 때에 가서는 그러한 경력을 증명할 서류나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행정증명서 등을 쉽게 제시하지 못한다. 그들의 서툰 불어실력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강화하기도 한다. 절차가 복잡한 수당의 경우에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종종 약화시키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인구는 열악한 보건상태(직업활동기에는 생활여건이자 그 후에는 근로여건), 조기 노령화 그리고 자립성의 조기 상실 등을 겪게 된다.⁴⁵⁾ 문화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연금의 일부를 그 수령자가 “그 나라”에 남아 있는 자기 가족에게 다시 송금하는 예가 종종 있다) 노인 관련 제도 내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이러한 인구는 대부분 기숙사, 호텔, 가구 딸린 임대아파트 등에서 산다고 한다. 일부 행정기관이나 결사, 직업조직 등이 복지비용부담의 조건을 개선시키려 시도하기도 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제안이 실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사회통계는 우리에게 중단기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정책이 부재한 일시적인 조치만이 있을 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노령 이민자에 대한 2002년도 보고서는 기숙사를 체계적으로 개축해서 이들의 진정한 “주거지”로 간주하게 되면 이들을 주거인구로 산입할 수 있을 것이라 권고하고, 또 사회동행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주거에의 보조서비스 개입의 유형을 개선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05년 5월 HCI는 “노령 이민노동자의 사회조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이민보건소(Césam Migrations santé)와 랑그독-루시옹 지방의 지방조사국(Observatoire régional)이 실시한 노령 이민노동자에 대한 지방조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⁴⁶⁾ 프랑스의 한 지방에 고유한 상황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 조사는 IGAS의 2002년도 보고서의 결론을 확인시켜 주고 또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즉 피조사자의 45%가 월수입이 610유로 미만이며, 수입원의 88%는 915유로 미만이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퇴직연금, 주거, 노인을 위

45) 1991년에 산업재해의 외국인 피해자의 비율은 13.1%이었던 반면 일반 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6.8%였다. 이 문제의 다양한 접근에 관해서는 특히 Claudine Attias-Donfut et Philippe Tessier, “Santé et vieillissement des immigrés”, in : *Retraite et société*, n° 46 (2005), pp.89-129.

46) HCI의 보고서는 이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가능하다 : www.hci.gouv.fr.

한 진료서비스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은 일반 프랑스인 퇴직자들에게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하겠다. HCI는 마지막으로 인구조사의 부족으로 우리가 이러한 인구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으며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프랑스 정치의 우선과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4. 국내 외국인 통계의 현황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은 2008년 기준으로 100만을 넘었다(법무부, 2008). 법무부의 외국인통계는 단기입국외국인, 등록외국인(90일 이상 체류자) 및 거소자(한국적 이탈자)와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법무부 자료와 달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부기준 외국인주민수는 2008년 7월 기준으로 89만 1341명이다(2008).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외국인 수는 237,517로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통계와 차이가 현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의 대부분은 외국인의 개념의 차이와 집계와 추정을 포함하는 통계적 방법론에 그 원인이 있다. 향후 외국인에 대한 추정은 법무부의 출입국통계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숫자(법무부의 자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정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의 숫자는 2020년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인 253만명, 2050년에는 409만명(전체의 9.2%)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 추계의 기초가 되는 국제인구이동은 인구현상 중 정의하거나 측정하기 가장 어려운 현상이라는 점과 국제 인구이동은 다양한 정치,

<표 1> 주요 국적별 체류 외국인 추이

	(명, %)							
	체류외국인		조선족		중국인		기타 외국인	
1999	381,116	100.0	67,036	17.6	49,963	13.1	264,117	69.3
2000	491,324	100.0	91,455	18.6	68,020	13.8	331,849	67.5
2001	566,835	100.0	112,334	19.8	88,850	15.7	365,651	64.5
2002	629,006	100.0	118,300	18.8	105,110	16.7	405,596	64.5
2003	678,687	100.0	132,305	19.5	105,192	15.5	441,190	65.0
2004	750,873	100.0	161,327	21.5	120,607	16.1	468,939	62.5
2005	747,467	100.0	167,589	22.4	114,441	15.3	465,437	62.3
2006	910,149	100.0	236,854	26.0	145,383	16.0	527,912	58.0
2007	1,066,273	100.0	328,621	30.8	174,806	16.4	562,846	52.8

자료출처: 법무부 외국인추계.

<표 2> 주요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추이

	(명, %)													
	총수		단순노무		전문		혼인		유학		기타			
2003	678,687	100.0	166,942	24.6	17,760	2.6	44,416	6.5	9,705	1.4	439,864	64.8		
2004	750,873	100.0	185,218	24.7	17,916	2.4	57,069	7.6	14,407	1.9	476,263	63.4		
2005	747,467	100.0	166,398	22.3	20,192	2.7	75,011	10.0	20,683	2.8	465,183	62.2		
2006	910,149	100.0	237,868	26.1	24,294	2.7	93,786	10.3	30,101	3.3	524,100	57.6		
2007	1,066,273	100.0	410,370	38.5	28,911	2.7	110,362	10.4	38,909	3.6	477,721	44.8		

자료출처: 법무부

경제, 문화 및 정책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인구변동 요인(출생 및 사망) 보다 정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의 인구이동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와 함께 유입인구의 국적별, 목적별 분류체계의 확립도 중요하다. 2007년말 현재 전체 체류 외국인을 주요 체류자격별로 보면, 단순노무는 38.5%, 혼인 10.4%, 유학은 3.6%인 반면 전문기술직은 2.7%에 불과하다. 국내의 외국 유입인구는 1993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들 외국인 인력은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로서 적절한 법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해 외국인인력의 편법사용, 인권침해, 송출비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후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2004년8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시행(2003년 8월 고용허가법 공포)하기에 이르렀고, 2007년 1월부터는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에 이르렀다.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에 대한 처우등의 이민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0개국을 송출국가로 선정하여 해당 국가와 MOU 체결했고 전문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나⁴⁷⁾ 그 수는 2만여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이 영어회화와 예술흥행에 종사에 국한시키고 있다.

이민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고찰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최근의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형태와 정부의 일련의 정책적 추이를 살펴보면 한편으로 외국인 차별 해소, 난민지원 강화, 영주자격 확대, 숙련외국인 장기체류 허용 등 대 외국인 우호정책을 펴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비숙련 노동이민자의 유입을 제한하는 등 이민정책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든다.

47)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등 전문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고용계약 체결 등 일정한 체류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취업 허용.

Ⅲ.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의 외국인 통계작성에 대한 실태과약을 통해 국내의 통계작성자의 외국인통계에 관한 이해를 돕는 데 있다. 고유한 역사와 제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에 대한 소개와 법, 사회제도, 복지정책의 측면에서의 관찰한 사례의 분석을 통해 국내의 외국인과 이민자관련 통계작성 기관과 이민정책 실무자, 그리고 국내의 관련 연구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을 포함함 통계작성 기관이 향후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통계에 대한 해외사례의 연구를 통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민통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와 “인구추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실태조사”, 그리고 법무부의 “출입국통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만 집계방법이나 조사 혹은 추정의 방법론, 그리고 자료의 목적에 따라 통계수치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현행 조사통계와 행정 자료의 연계, 그리고 행정부서간의 통계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프랑스의 외국인과 이민자에 관한 통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로서 우리나라의 이민관련 통계에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먼저, 프랑스의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의 출입국관리법이나 해외이주법과 같은 관련 법률들의 조율과 정비를 통해 “외국인”, “이민자”, “체류민”과 같은 용어의 정의와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도출해 내었다. 두 번째, 급격히 변화하는 이민의 추세와 동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서가 통계기준과 측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서 시의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궁극적으로, 시의성 있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이민관련 정책부서는 이민정책의 방향성이 이민자의 출신지와 이민목적에 기반을 둔 정책적 욕구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통합적인 제도를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외국인에 관한 본 연구에서 지적된 이슈는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정부로 하여금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 적응, 그 외 제반 이민관련 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이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능하게 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민관련 정부정책을 적절한 방향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자는 통계의 도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프랑스의 공식 통계에만 일어나는 고유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통계작성 기관의 통계적 필요와 목적이 사회현상을 밝히고자 하는 사회과학자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사결정자의 필요와 목적에 반드시 상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일반적인 사실로써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외국의 통계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 집중한 반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국내의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한 한계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국내의 외국인에 대한 정의와 집계는 통계작성 기관이나 통계의 종류에 따라서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법무부 출입국통계,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실태조사는 모두 국가가 인정한 승인 통계라는 점에서 공식적이지만 “외국인”에 대한 분류와 집계방식은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이전에 언급했다시피, 이로 인해 통계수치상의 현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 나라의 통계가 통계의 유형이나 작성기관에 따라 이처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다. 중앙 통계작성기관으로서의 통계청은 우선적으로 국내 외국인 관련통계의 조정과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가 통계청에 부여한 통계조정권은 이러한 시급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부처 및 통계작성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과 조율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 통계라는 주제는 우리나라의 공식통계가 수년 전부터 안고 있는 과제이면서 동시에 쉽사리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본 연구가 해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면서 동시에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국내의 외국인통계에 대한 통계정책과 통계제도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 자료가 미흡하고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의 사례 연구를 통한 국내 외국인통계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대안을 내어 놓기에 커다란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다양성의 증가와 국경선의 개방을 통해 국내적으로만 논의되던 인구 이동에 대한 논의를 궁극적으로 아시아권을 포함한 국제적인 공통적인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간의 통계자료와 이민관련 통계의 표준화 작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국가 중앙통계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 전통적인 산업연수생을 비롯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에 이르기까지 이민자를 우리나라에

“보내는” 국가의 통계청이 대부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의 아세안(ASEAN)국가들을 비롯한 저개발 국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나라 통계 이민자에 대한 통계를 주고받는 자료의 공유하는 노력과 더불어 국가간의 통계 분류와 측정기준에 대한 일관적이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번역: 홍기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시간강사
legalhistory@snu.ac.kr

참고문헌

- 법무부 (2008) 《외국인 추정》.
-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설동훈 (2007) 《외국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행정분야 종합보고서. 재정경제부.
- 통계청 (2007) 《국제인구이동통계》.
- 행정안전부 (2008) 《외국인주민실태조사》.
- Attias-Donfut (2005) Claudine et Philippe Tessier, “Santé et vieillissement des immigrants” in : *Retraite et société*, n° 46.
- Bas-Theron (novembre 2002) Françoise et Maurice Michel, *Rapport sur les immigrants vieillissants*.
- Borrel, C. (2004) “Les limites de l’approche statistiques des circulations migratoires. Le système statistique français” in : *RFAS*, n° 2 (www.sante.gouv.fr/drees/rfas/rfas200402/200402-art05.pdf).
- Borrel, Catherine, (août 2006) “Enquêtes annuelles de recensement 2004 et 2005” in : *Insee Première*, n° 1098 (www.insee.fr/fr/ffc/ipweb/ip1098/ip1098.html).
- Cassan, F. et al. (2000) “Étude de l’histoire familiale : l’édition 1999 de l’enquête Famille” in : *Courrier des statistiques*, Insee, n° 93.
- Chemin, Anne, (décembre 2007) “2005, an I du recensement nouveau : mieux connaître la ‘population légale’” *Le Monde. Dossiers et Documents*,

n° 370.

Conseil nationale du sida, (décembre 2005) *Rapport suivi d'un avis du Conseil national du sida sur la situation des personnes atteintes par le VIH de nationalité étrangère et en irrégularité de séjour*, Paris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CRR, (2006). *Rapport d'activité*.

Gille, Bernard, (1964) *Les sources statistiques de l'histoire de France : des enquêtes du XVIIe siècle à 1870*, Genève : Droz,

HCI, (février 1991) *Pour un modèle français d'intégration. Rapport au Premier ministre*, Paris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coll. des rapports officiels,

Héran, François, "Statistiques ethniques ou mesure de la diversité?" in : *Le Monde. Dossiers et documents*.

Lacroix, J. et S. Thave, (1997) "Les immigrés dans les recensements : décalage entre législation et outils de mesure" *Revue Française des Affaires Sociales*, n° 2.

Lemel, Y. (1988) "Qu'est-ce qu'une enquête statistique" in : V. Lemarchand et M. Marpsat (dir.), *Construire les données sociales*, Paris : INSEE,

Lequin, Yves (dir.) (2006) *Histoire des étrangers et de l'immigration en France*, Paris : Larousse.

Maille, Didier et al., (juillet-août 2005) "L'aide médicale d'État : comment un droit se vide de son sens faute d'être réellement universel" in : *Revue de droit sanitaire et social*, n° 4.

Mission d'analyse et de proposition sur les conditions d'accueil des mineurs étrangers en France, *Immigration clandestine : une réalité inacceptable, une réponse ferme, juste et humaine. Rapport*.(janvier 2005).

Padieu, Bernard, (1977-1987) "La diffusion de l'information statistique" in : Joëlle Affichard (dir.), *Pour une histoire de la statistique, tome II : Matériaux*, Paris : Economica-Insee,

Preuss-Laussinotte, Sylvia, (2000) *Les fichiers et les étrangers au coeur des nouvelles politiques de sécurité*, Paris : Bibliothèque de droit public,

SGF, (1893) *Dénombrement des étrangers en France. Résultats statistiques du dénombrement de 1891*, Paris : Imprimerie nationale,

- Simon, P., (1997) “La représentation statistique de l’immigration. Peut-on comptabiliser l’ethnicité?” in : J.-L. Rallu et al. (dir.), *Old and new minorities / Anciennes et nouvelles minorités*, Paris : John Libbey Eurotext/INED,
- Simon, Patrick, (1998) “Nationalité et origine dans la statistique française. Les catégories ambiguës” *Population*, n° 3.
- Spire, Alexis et Dominique Merlié, (juillet-septembre 1999) “La question des origines dans les statistiques en France. Les enjeux d’une controverse” *Le mouvement social*, n° 188.
- Thierry, Xavier,(2001) “La fréquence de renouvellement des premiers titres de séjour” in : *Population*, n° 56.
- Tribalat, M. (dir.), (1991) *Cent ans d’immigration. Étrangers d’hier, Français d’aujourd’hui*, Paris : PUF-INED,
- Tribalat, M., “Combien sont les Français d’origine étrangère?” in : *Économie et Statistique*, n° 242.
- Tribalat, M., (décembre 1989) “Immigrés, étrangers, français : l’imbroglio statistique” in : *Population et sociétés*, n° 241.
- Tribalat, Michèle, (printemps 2005) “Les populations d’origine étrangère en France” *Commentaire*, n° 109.
- United Nations. (2006) *International Migration 2006*. New York: United Nations.
- Weil, Patrick, (2002) *Qu’est-ce qu’un Français? Histoir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depuis la Révolution*, Paris : Grasset,
- Weil, Patrick, (2005) “Le fichier AGDREF (Gestion informatisée des dossiers de ressortissants étrangers en France). Quelle utilisation pour la statistique des flux migratoires en France? Entretien avec Xavier Thierry” in : *Migrance*, n° 23 (www.timc.msh-paris.fr/spip.php?article73).
- Weil, Patrick, (novembre 2007) “Le Conseil constitutionnel invalide les statistiques ethniques” *Le Monde*, 17 .

A Socio-demographic Study on Foreign Residents in France: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tistical System of Foreigners in South Korea

Florence Renucci · Myung Jin Hwang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some statistical aspects in response to the increase of foreigners and immigrants within the population of Korea. Such an interest conducts our case study of France with regard to the census and legal systems that restrict definition and measures of foreign population in the country. This study also explores historical background, legal entities and authorities involved in policy-related decision making in census and other statistics, and processes of statistical production on the concerned population. Also, an importance of statistical contributions to the immigration policies is discussed.

Key Words: migration, foreigner, census, statistics